

부실벌점제도 운영의 문제점 및 개선대책

최상만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건설관리실장

1. 배경 및 취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건설 관련 안전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그 피해 정도가 심각해짐으로 인하여 건설공사 현장에서 부실 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여 이러한 대형 사고를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인적, 물적 피해를 줄이고자 하는 정부의 취지에 따라 각종 건설 현장의 부실 요인을 분석한 결과 일선 건설현장에 투입되어 공사에 참여하는 기능공, 기술자, 감리자와 이러한 인력이 소속된 건설 관련업체를 운영하는 설계, 감리, 건설회사의 임직원의 사고전환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에도 이러한 정부의 기대에 못 미치는 부분에 대하여 각 분야별로 철저한 검토와 관리를 통하여 근원적 부실을 제거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건설기술관리법을 개정, '95. 10. 1부터 부실 벌점 제도를 도입하여 설계, 시공, 감리시에 잘못될 수 있는 부분을 각 사례별, 등급별로 기준을 정하여 부실 점수를 부여하고 이를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등에 적용하여 불이익을 줌으로써 부실공사를 방지하고자 함에 있다.

2. 부실 벌점 관리기준

- 부실 측정기관 : 건설교통부장관, 빌주청, 건설공사 인·허가 또는 승인 기관의 장
- 대상 : 건설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 감리전문회사, 설계 등 용역업자 및 소속기관의 장
- 위반 등급 : 1, 2, 3급
- 부실 점수 : 업체 또는 건설기술자가 받은 부실 벌점에 일정 계수를 곱하여 불이익 부여 시 적용 가능토록 환산한 점수
- 부실 벌점 제외 대상이 되는 경우
 - 건설업법 제50조 및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 취소 또는 영업 정지
 - 주택건설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 말소 또는 영업 정지
 - 건설기술관리법 제6조의 4의 규정에 의한 업무정지
 - 건설기술관리법 제20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 제한
 - 건설기술관리법 제20조의 4의 규정에 의한 업무 정지
 - 건설기술관리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 취소 또는 업무정지
 - 건설기술관리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 정지
 - 국가기술자격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

- 격 취소 또는 자격 정지
-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한 행정 처분
 - ※ 제재 규정상의 내용과 부실 측정기준에서 정한 부실 사례가 유사한 경우에는 이를 부실 별점으로만 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3. 부실 별점의 산정 방법

- 측정기관은 업체 및 건설기술자 등의 부실 측정기준에서 정한 위반 내용의 경중에 따라 1급, 2급, 3급으로 구분하여 해당 별점을 부과한다.
- 당해 반기에 동일 업체의 공사를 2건 이상, 동일한 현장을 2회 이상 점검한 경우에는 이를 평균한 부실 별점을 당해 업체 또는 건설 기술자 등의 평균 부실 별점으로 하며, 당해 연도의 평균 부실 별점은 각 반기별 평균 부실 별점을 합계하여 평균한다.
- 누계 평균 부실 별점은 당해 업체 또는 건설 기술자 등의 최근 3년간의 평균 부실 별점을 합계하여 산정한다.
- 부실 별점 경감기준의 적용은 경감 사례별 점수를 업체 또는 건설기술자 등의 평균 부실 별점에서 경감한다.
- 점검시 지적내용과 부실 사례가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유사한 부실 사례의 별점을 준용하여 부과한다.
- 건설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세부 부실 측정기준을 마련하여 측정기관으로 하여금 부실 별점 산정에 참고하게 할 수 있다.
- 관련 건설기술자 등의 경우 책임기술자 및 당해 보조기술자에게 각각 이를 적용한다.

4. 불이익 적용 부실 점수의 산정 기준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용역업자에 대한 부실 점수는 최근 3년간의 누계 평균 부실 별점에 대상별 적용계수를 곱하여 산정하여 감산한다(최고 5점을 초과할 수 없다).

5. 부실 별점의 관리 및 적용

- 업체 및 건설기술자 등에 대한 부실 점수는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시와 다른 법에서 규정한 불이익 부여시 적용할 수 있다.
- 업체에 대한 부실 별점 측정은 1995년 10월 1일 이후부터 실시하며, 건설기술자 등에 대한 부실 별점 측정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실시한다.
- 규정에 따라 측정한 부실 별점을 불이익과 연계하여 적용하는 시기는 각각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6. 부실 별점의 측정기준 및 경감 기준

- 건설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 감리업체, 설계 등 용역업자, 건설기술자, 설계 등 용역을 수행한 건설기술자, 감리원 등으로 분류하여 주요 부실 사례와 적용 등급 기준에 따라 부실 별점을 측정한다.
- 부실 별점 경감 기준
 - 시공능력 평가 및 우수업체에 대한 부실 별점의 경감은 1년간 해당업체에 적용하며, 표창의 경우에는 1회만 적용한다.
 - 7. 1부터 7. 4까지 당해 현장에 대하여 경감 적용하고, 7. 5부터 7. 10까지는 최종 집계한 업체별 평균 별점에서 경감한다.
 - 8. 1부터 8. 3까지는 최종 집계한 업체 및 감리원별 평균 점수에서 경감한다.
 - 9. 1부터 9. 5까지는 최종 집계한 업체 및

참여 기술자별 평균 점수에서 경감한다.

7. 부실 측정의 운영상 문제점

- 부실 측정기관의 인원 부족으로 모든 건설현장을 형평성 있게 전부 점검할 수 없는 관계로 점검 대상이 되는 공사 현장은 대상 제외된 공사 현장에 비하여 불이익을 받는 등 형평성이 결여됨
- 부실 별점을 점검 횟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관계로 인하여 기 지적된 부실의 별점에 매분기 내의 점검 횟수에 따라 가·감점 요인이 될 수 있어 적용 불합리성이 있음
- 건설기술관리법 21조 4 건설 공사 등의 부실 측정에 의하면 “부실 공사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부실의 정도를 측정하여 부실 별점을 줄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어 강제성이 없으므로 각 발주처별로 부실 근절 의지에 따라 부실 별점 부여 여부가 결정되는 관계로 발주처에 따라 도급자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등 형평성 있는 측정이 어렵다.
- 점검기관 소속 직원의 부실 별점 적용시 1, 2, 3급 분류가 각각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점검기관에 따라 동일 부실 내용임에도 적용

별점이 달라질 수 있음

- '97. 1. 1부터 적용하는 현장 기능공에 대한 관리 방안의 확정이 시급하다.
- 부실 점수를 확정하여 적용하는 입찰 자격 사전 심사시 발주처별로 배점이 달리 적용될 수 있다.

8. 개선대책

- 발주처별로 점검 유형을 구분하고 점검 횟수의 결정 기준 및 적용 기준을 정하여 운용할 필요가 있다.
- 건설기술관리법에서의 부실 별점 부여가 강제 규정상이 아니더라도 점검기관 또는 발주처에서 점검 후에는 반드시 부실 별점을 부여하고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 공정성 있는 점검을 위하여 점검대상을 선정하고 기관별로 해당 현장 기준 점검 횟수를 결정하여 점검을 시행하여야 한다.
- 입찰자격 사전 심사시 적용할 불이익 부여 기준을 확정 통일하여 전기관이 동일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
- 점검기관별 또는 발주처별로 부실 별점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와 인원 보강이 필요하다.